|  |  |  |
| --- | --- | --- |
| **산재보험요율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인사부발[2015]71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력자원사회보장청 (국)·재정청(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인력 자원사회보장국·재무국: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의 '적절한 시기에 사회보험요율을 적당히 인하한다'는 정신에 따라 사회보험법, <공상보험조례>를 보다 확실하게 관철하고 사회보험요율 정책의 과학성, 합리성을 강화하여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5년 10월 1일부터 현행 산재보험요율 정책을 조정한다. 다음과 같이 관련 사항을 통보한다.  1. 업종별 산재 리스크 유형 분류 관련  <국민경제업종분류>(GB/T 4754—2011)의 업종 분류에 따라 각 업종의 산재 리스크 유형을 리스크 작은 순으로 1류~8류로 분류한다(첨부 참조).  2. 차별화된 업종별 요율 및 등급 확정 관련  산재 리스크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업종별 산재보험 기준요율을 집행한다. 각 업종의 산재 리스크에 따라 전국 산재보험 업종 기준요율을 1류부터 8류까지 각각 해당 업종 고용업체 직원급여 총액의 0.2%, 0.4%, 0.7%, 0.9%, 1.1%, 1.3%, 1.6%, 1.9% 안팎으로 통제한다.  요율 조정의 방법으로 각 업종 내의 요율 등급을 확정한다. 1류 업종은 세개 등급으로 구분 한다. 즉,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기준요율의 120%, 150%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 2류~8류 업종은 다섯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즉,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기준요율의 120%, 150%로 상향조정하거나 기준요율의 80%, 50%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  각 총괄기획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는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지출을 근거로 수입을 확정하고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유지'하는 원칙에 따라 본 지역의 산재보험 업종 기준요율의 상세한 표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노조조직, 고용업체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 총괄기획 지역 인민정부의 비준을 득한 후 실시한다. 기준요율의 상세한 표준은 총괄기획 지역의 경제산업구조 변화, 산재보험비 사용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조정할 수 있다.  3. 업체의 요율 확정과 조정  총괄기획 지역의 사회보험처리기구는 고용업체의 산재보험비 사용, 산재 발생율, 직업병 위험도 등 요인을 근거로 그 산재보험요율을 확정하고 상기 요인의 변화에 따라 1년내지 3년을 주기로 그가 적용받는 소속업종 요율 등급 조정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조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고용업체의 경우 상하 1~2개 등급까지 조정할 수 있다. 총괄기획 지역의 최저 산재보험요율은 해당 지역의 1류 리스크 업종의 기준요율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요율 조정의 구체 적인 방법은 총괄기획 지역의 인력자원사회 보장부서와 재정부서가 제정하고 노조조직, 고용업체 대표의 의견을 청취한다.  4. 요율 보고·비안(備案)제도  각 총괄기획 지역이 확정한 산재보험 업종 기준요율의 상세한 표준, 요율 조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와 재정부서에 보고 및 비안(備案)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 재정부서는 매년마다 각 총괄기획 지역의 산재보험 업종 기준요율 표준의 확정과 변화 및 변동 요율 실시 상황을 취합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첨부: 산재보험 업종 리스크 분류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2015년 7월 22일  첨부 다운로드: 산재보험 업종 리스크 분류표  <http://www.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507/P020150731307788019625.doc> |  | **关于调整工伤保险费率政策的通知**  人社部发[2015]71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力资源社会保障厅（局）、财政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人力资源社会保障局、财务局：  　　按照党的十八届三中全会提出的“适时适当降低社会保险费率”的精神，为更好贯彻社会保险法、《工伤保险条例》，使工伤保险费率政策更加科学、合理，适应经济社会发展的需要，经国务院批准，自2015年10月1日起，调整现行工伤保险费率政策。现将有关事项通知如下：  　　一、关于行业工伤风险类别划分  　　按照《国民经济行业分类》（GB/T 4754—2011）对行业的划分，根据不同行业的工伤风险程度，由低到高，依次将行业工伤风险类别划分为一类至八类（见附件）。  　　二、关于行业差别费率及其档次确定  　　不同工伤风险类别的行业执行不同的工伤保险行业基准费率。各行业工伤风险类别对应的全国工伤保险行业基准费率为，一类至八类分别控制在该行业用人单位职工工资总额的0.2%、0.4%、0.7%、0.9%、1.1%、1.3%、1.6%、1.9%左右。  　　通过费率浮动的办法确定每个行业内的费率档次。一类行业分为三个档次，即在基准费率的基础上，可向上浮动至120%、150%，二类至八类行业分为五个档次，即在基准费率的基础上，可分别向上浮动至120%、150%或向下浮动至80%、50%。  　　各统筹地区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要会同财政部门，按照“以支定收、收支平衡”的原则，合理确定本地区工伤保险行业基准费率具体标准，并征求工会组织、用人单位代表的意见，报统筹地区人民政府批准后实施。基准费率的具体标准可根据统筹地区经济产业结构变动、工伤保险费使用等情况适时调整。  　　三、关于单位费率的确定与浮动  　　统筹地区社会保险经办机构根据用人单位工伤保险费使用、工伤发生率、职业病危害程度等因素，确定其工伤保险费率，并可依据上述因素变化情况，每一至三年确定其在所属行业不同费率档次间是否浮动。对符合浮动条件的用人单位，每次可上下浮动一档或两档。统筹地区工伤保险最低费率不低于本地区一类风险行业基准费率。费率浮动的具体办法由统筹地区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商财政部门制定，并征求工会组织、用人单位代表的意见。  　　四、关于费率报备制度  　　各统筹地区确定的工伤保险行业基准费率具体标准、费率浮动具体办法，应报省级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和财政部门备案并接受指导。省级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财政部门应每年将各统筹地区工伤保险行业基准费率标准确定和变化以及浮动费率实施情况汇总报人力资源社会保障部、财政部。  　　附件：工伤保险行业风险分类表  　　人力资源社会保障部  　　财政部  　　2015年7月22日  附件下载: 工伤保险行业风险分类表.doc  <http://www.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507/P020150731307788019625.doc> |